

정관 신·구대비표

| 현행 | 변경안 | 비고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13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</p> <p>1. 이사 <u>9인</u>(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)</p> <p>2. 감사 2인</p> | <p>제13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이사 <u>10인</u>(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| 이사정수 변경 |
| <p>제47조(휴직의 사유)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<u>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</u>,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11. 창업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</u></p> <p><u>12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·연구 등을 하게 된 때</u></p> | <p>제47조(휴직의 사유)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<u>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</u>,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11. 「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</u></p> <p><u>12. 창업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</u></p> <p><u>13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·연구 등을 하게 된 때</u></p> | 사립학교법 제59조 (휴직의 사유) 반영 |
| <p>제48조(휴직의 기간)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10. 제47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<u>11. 제47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.</u></p> | <p>제48조(휴직의 기간)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제47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11. 제47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<u>12. 제47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.</u></p> | 정관 제47조 제11호 신설 반영 |

| | | |
|--|--|---|
| <p>제50조(휴직교원의 처우) ① ~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</u>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제50조(휴직교원의 처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4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.</u> ④ <u>제1항 내지 제3항</u>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육아휴직수당 신설</p> |
| <p>제51조(직위해제 및 해임) ① ~ ⑥ (생략) ⑦ <u>제1항 제1호</u>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<u>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.</u></p> | <p>제51조(직위해제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(삭제)</p> | <p>사립학교법 제58조, 제58조의2 반영</p> |
| <p>부 칙</p>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부 칙</p> <p><u>이 정관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| |